

## 클라이언트이면서(AND) 죄인,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러나 죄인(sinner)이라는 단어 사용은 조금은 조심성 있게 ...

강상우 사회복지 CORAM DEO

### 논문 요약

본고는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김희철, 2018)라는 논문에 대한 재고에 목적이 있다. 위의 논문의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인 동성애 죄(a sin) 고(故)로 동성애자인 내담자는 죄인(sinner)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뢰(依頼, referral)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윤리강령(Ethical Code)이 규정하고 있는 성취향과 사회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논문의 저자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논문의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동성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담자와 동성애 삶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내담자의 니즈(needs)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저자의 지적이 맞겠지만—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그 이외의 리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담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친동성애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서비스 제공—심지어는 반동성애적(pro-hetero, anti-homo) 서비스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관련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성애적 성향을 거부하고 이성애적 성 정체성을 원하는 경우 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성 정체성에 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제어: 동성애. (기독교)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의뢰. 죄(인). 성적 일탈행위. 윤리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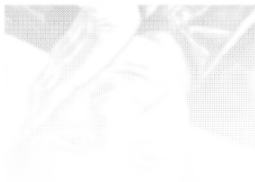


## I 들어가는 말

### 먼저 잘못된 자료[情報]에 기인한 잘못된 해석의 우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촉발된 광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미약한 긴급 조치에 직면하여 이탈리아 국가연구센터의 선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겠다. “이탈리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만 건의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자의 80-90%에게서 일종의 독감과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증세가 나타난다. 감염자의 10-15%에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다수는 그저 지나가는 증상만 보인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Agamben, 2021: 33, “전염병의 발명[L’invenzione di un’epidemia]”. 32-36.[2020.02.26.]



… 나는 앞선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탈리아 통계청장 장 카를로 블란자르도의 보고서를 언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년 동안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적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심장마비나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양성 환자도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간주하는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Agamben, 2021: 85,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Sul vero e sul falso]”. 82-86.[2020.04.28.]<sup>1)</sup>

코로나-19(COVID-19) 발병 초기에 ‘가벼운 독감’ 정도로 오판한 공식적인 자료의 인용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잘못된 그러한 발언의 근거에는 이탈리아 국가연구센터의 선언[잘못된 데이터와 그에 근거한 해석]이 있었다. 아감벤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나온 오류 있는 정보는 그의 잘못된 이해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예측으로 이어진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아감벤을 비롯한 다수의 노년층 이탈리아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70시가 넘는 시간 동안 노인들을 집에만 머물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며 서명과 함께 호소의 글을 발표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당시 많은 학자들로부터 아감벤은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1) 참고로 아감벤은 2020년 3월 28일 『르 몽드(Le Monde)』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저는 바이러스학자도, 의사도 아닙니다. 단지 전염병에서 비롯한 극도로 심각한 윤리적, 정치적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감벤은 바이러스학자와 의사, 철학자와 정치학자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던 팬데믹을 지극히 인문학적인 고찰로 접근했을 뿐이다.”(박문정, in Agamben, 2021: 195, 박문정, “옮긴이의 말: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192-199)

##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관점 밝히기 ... 용어 정의

본고는 김희철 연구원의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라는 논문에 대한 재고”를 연구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 항상 두려운 것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문해(文解, literacy)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본고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는 김희철 연구원의 논문인,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Sinner or Client? When a Christian Social Worker Meets a Homosexual Client)에 대해서 재고(再考)하는 것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본고는 김 연구원 논문의 전개 과정을 따르면서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主張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형식적으로나마 김희철 연구원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속한다. 김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희철, 2018: 78) 본고 또한 실증적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이론적 고찰임에 불과하다는 점도 밝히고 싶다.

무엇보다 개인적 관점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관해서 넓게는 전통주의적 입장에—반동성애/친이성애적 시각(Pro-hetero, Anti-homo perspective)을 지닌다—서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간통이나 사전행위와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로 본다는 점에서 극단적 반동성애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시대정신(Geistzeit)과 학문적 조류에 역행할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보다 다양하고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인 가치는 물론이며 친동성애적 가치뿐만 아니라 반동성애적 가치들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동성애에 관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동성애에 대해 사회는 반-친/중립적/무관심/극단적 반-친동성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며, 사회구성원들은 친동성애적 서비스 제공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중립적이라는 말은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와 더불어 친 또는 반 동성애적 성향을 모두 수용/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사회복지 시설(기관) 등에서의 중립적이라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인 가치를 둔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친동성애적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반동성애적인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친 또는 반동성애적 서비스의 제공과 실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동성애적 가치도 사회와 사회복지학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싶다.

## II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사와 동성애자 내담자가 만나게 되면

김 연구원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라는 논문의 전체적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논문 제목인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라는 물음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다. 사회복지사 중 ⅓(34.2%, 김희철, 2018: 54;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2016)을 차지하는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실무현장에서 동성애를 바라 볼 때에 동성애 내담자를 죄인(sinner)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클라이언트(client)로 바라보는가는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의 가치판단에 대해 제목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 [표: “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의 목차]

들어가며 . . .

- I. 서론
- II.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여러 시각들
- III.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 가치 및 윤리강령
- IV.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 V.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뢰(Referral)-최선의 선택인가?
- VI. 결론

[첨부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각 교단마다 신학적 해석과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에 대한 판단은 대체적으로 “죄”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김희철, 2018: 56)

사회복지학은 가치 개입적인 학문(Zastrow, 1981: 25인 동시에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유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실천 학문이다.(김희철, 2018: 55))<sup>2)</sup>

신앙을 가진, 즉 유신론적 사유를 하는, 한 개인의 종교관 또는 신앙관은 그 개인의 가치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체계임(Hassen, 1948)을 전제로 하였을 때, 기독교인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 개신교의 공식적 입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여러 사안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가치판단 기준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김희철, 2018: 56 저자가 Johannes Hassen을 Hassen으로 잘못 타이핑한 것 같다.)<sup>3)</sup>

김 연구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를 죄(sin)로 보는

2) Zastrow, Charles H. (1981). The Practice of Social Work, The Dorsey Press.

3) Hassen, Johanne (1948). Religionsphilosophie. Vols 1-2. München & Basel: Reinhardt.

것과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가치 개입적(value-laden) 성격을 지닌다는 찰스 H. 자스트로우(Charles Harold Zastrow)의 지적과 더불어 신앙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요하네스 하센(Johannes Hassen)의 지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내담자인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뢰(依頼, referral)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회복지 윤리강령 규정(Ethical Code)에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로 이어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연구원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V.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뢰(Referral)-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나 결론 부분에서 사회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나 더불어서 문화적 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도 같은 맥락의 진술인 것 같다.]

동성애자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을 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 개인의 종교적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성정체성이 상충 될 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뢰”의 윤리적 쟁점과 현실 가능성 측면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동성애자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케이스에서 가장 최고로 고려해야 하는 가치로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역량을 상아탑에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의 보완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김희철, 2018: 71-72)

김 연구원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에게 동성애는 죄(sin)가 된다. 그러한 이유로 내담자인 동성애자는 죄인(sinner)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의 동성애자인 내담자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죄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의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취향(性趣向)과 사회정의(社會正義)라는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倫理綱領, Ethical Code)<sup>4)</sup>의 精神/가치와 거리가

4)

####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요약

##### ■ 전문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실현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 ■ 윤리기준

I.1.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I.1.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I.1.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먼 조치이기 때문이라.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의뢰가 아닌 윤리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성취향과 사회정의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結論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VI. 결론. '1. 최고의 가치로서 "사회정의"의 실현.', '2.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증진의 의무와 사회복지교육에의 함의"] 이것이 김 연구원의 논문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이자 글의 전개 과정이다.

## 1 내담자 동성애자가 죄인이나 클라이언트냐(Sinner Or Client)는 질문과 관련된 재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독교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동성애 내담자에 대해서 김 연구원이 제기한 '죄인이나(OR) 클라이언트냐'는 물음에 대해서 굳이 대답하자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본고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나(OR)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이면서(AND) 죄인'[접속어와 단어의 순서가 바뀐 점도 주의하라]—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죄인(sinn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止揚)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Sanctus 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의 서신에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Cum dilectione hominum et odio vitiorum.; Hate the sin, not the sinner)"는 문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못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기독교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죄인—신앙적 차원에서의 죄/죄인(sin/sinner)—이라는 점을 가급적(可及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밖의 일반인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일반 사회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말이다. 오늘날 동성애는 실정법상의 죄(crime)는 아니지만, 종교적/信仰的 의미의 죄(sin)이기 때문이다. 만약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실정법상의 죄/죄인으로 이해하기 쉽고—개인적인 우려인지 몰라도 과거 서양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나 성경 구약의 내용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기독교의 동성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이 어떤 때인데, 동성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한다고?"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1) 권익옹호 최우선 가치

2) 존엄성 존중

3) 자기결정권 최대한 행사, 이익 대변

IV.1) 인권존중, 인간평등에 헌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

IV.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자료: 김희철(2018: 58, 64, 74-75 내용 혼합 및 수정, 윤리강령은 80-85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동성애는 일반적인 기독교적 관점—전통/정통주의자의 관점—에서 죄(sin)인 것은 맞다. 전통주의자의 관점에서 동성애가 종교/信仰的인 관점의 죄(a sin)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동성애자는 김 연구원이 기술했고 있는 것처럼 죄인(sinner)인 것이다. 참고로 동성애 관련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利害關係)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부풀어져 있는 감이 있다[過大化/過剩化現象]. 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마치 죽을/죽일 죄처럼 부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하는 ‘내적 문제를 외부화하는 과정’[‘타자화를 넘어 극단적 악마화’로 이어지는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 같다. “교회 안의 부정적인 문제는 보지 말고 교회 밖의 심각한 저 동성애를 바라보아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동성애를 신앙적 의미에서 죄라는 진술/주장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과대 대표(過大/誇大代表)되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혐오(phobia)를 가져올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퀴어 신학(queer theology/gay reading)으로 대표될 수 있는 친동성적 경향을 지니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동성애에 대해 자랑(gay pride)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호모필리아(homophilia)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성애자들 중에 누가 “나는 이성애자야 대단하지?”하면서 이성애 퍼레이드(parade)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잘 모르겠다. ‘게이 프라이드’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으로 앞으로 ‘이성애 퍼레이드 축제’가 앞으로 광장에서 행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신학적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동성애를 신앙적인 죄(sin)로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합당한 성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즉 성경이 허용하는 성행위는 단 하나 즉 ‘결혼한 남녀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성관계(intercourse, 性交)’뿐이다. (잘못된 성관계를 한자로 誤入/外道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관계인 동성애와 그 밖의 다른 성행위는 성적 일탈행위로 성적인 죄가 된다.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인 것이다. 동성애는 간통이나 간음, 혼전 성관계와 같은 하나의 성적 일탈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동성애의 위치와 관련해서 가장 비근(卑近)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통(姦通, adultery)이다. 과거 간통은 실정법상의 죄(crime, 實定法上性犯罪)였다. 그렇기에 간통은 간통죄로 불렸고 상간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 형사상(刑事上)의 처벌(處罰)을 했었다.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간통은 실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형법에서 간통죄는 사라졌다.(2015.02.26.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성행위는 결혼 관계에 있는 남녀부부 이성 간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간통은 여전히 성적 일탈행위의 하나로 보고 간통을 죄(a sin)로 교회 공동체에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죄라함은 종교적인 의미의 죄(sin, 宗教的罪)다. 과거 특히 서구사회—오늘날 이슬람

사회를 보면—에서는 동성애는 실정법상의 죄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가혹한 처벌을 가했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과거의 역사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한 이유는 꼭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默認)하는 사회도 일부 존재했었다. 이 경우에도 꼭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에 대한 실정법상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sup>5)</sup> 그래서 동성애는 실정법상의 죄가 아니다. 실정법상의 동성애죄라는 규정(法條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罪刑法定主義에 따라)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동성애를 성적 일탈의 한 행태인 신앙적인 의미의 죄로 보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간통과 동성애는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형태에 속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간통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밖의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실정법상의 죄가 아니기에 간통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일반인들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차원의 간통이 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간통을 저지른/저지르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鐵面皮, thick-skinned]를 제외하고는 내/대놓고 ‘내가 범한 간통행위가 잘못/정당하오/잘못이 없오’는 하지 못한다/안 한다는 것이다. 간통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를 행했던/행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간통이라는 성적일탈 행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 말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일반 사회인들 중에도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일반인 중에 심지어 극단적인 혐오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성 행위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삶에 대해서 정체성(Homosexual identity)을 가지기 위해 임파워링(empowering)을 요구하는 이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성애적 행위/삶/성향에 대해서 탈출(ex-gay, get away)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수(數)가 얼마나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말이다. 그러므로 김 연구원의 논문이 “동성애에 대한 인정만이 주류 가치[윤리강령]에 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 사회복지실천은 동성애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윤리강령에 포함된 성취향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매우 원론적 차원에서의 논리 전개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김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복지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논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 사회복지사 중에도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일부 친동성애적 견해를

5)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계간(鷄姦) 규정으로 불리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特別權力關係] 일부에서는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가진 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기독교 내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물론 일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다는 점은 김 연구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必要性, ‘그것 봐 그러니까 성취향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동성애에 관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야’라는 식의 정당성의 빌미를 제공해 줄수도 있을 것이다]에 힘을 실어주는 구실로 역(逆)이용될 여지가 있겠지만 말이다. 하여튼 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동성애적 시각을 기독교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사도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에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개인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의 견해—반동성애/친이성애적 관점—를 지닌 본 연구자는 “동성애=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간통/간음/혼전 성관계와 유사함”으로 이해한다. 동성애가 간통과 같은 성격의 성적 일탈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김 연구자가 인용하고 있는 송실대학교 김지학 교수의 언급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친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주장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있는 견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2017.12.20)교수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기독교 신앙의 편견 없는 포용성을 강조한다. “예수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주류 사회의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여성, 어린이, 과부, 성노동자 등과 함께 먹고 마셨다. 사회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는 사회적 소수자들 및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의 정신은 “포함”의 정신이다. 예수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렇게 살았다. 예수는 당대 최고의 사회복지사이자 인권옹호자였다”(김희철, 2018: 73)<sup>6)</sup>

김지학 교수와 같은 주장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togetherness)=예수님이 인정하심(approval)’이라는 해석을 한다. 김지학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그 모임에 부자는, 권세가를 들어갈 수 없을까?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이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수님

6) 한국다양성연구소 (2017.12.20.).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전문가”, <https://ko-kr.facebook.com/diversitykorea/photos/AC/1514929055265407/>

의 이러한 모습이 김 연구원이 말한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적인 무비판적인 태도 (nonjudgmental attitude)와 존중(acceptance)의 자세’(김희철, 2018: 75)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마19:16-24 참조)처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간음한 여인(요8:1-11 참조)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사(赦)해주셨다고 해서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삶을 살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조금 설교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삶이 바뀌길 원할 것이며,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당성(正當性)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염치(廉恥)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頓悟)나 점오(漸悟)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의 회심(悔心)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종류의 급진적인 회심[急進的悔心, 돈오와 비슷한 형태의]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증거들이 여럿 존재한다고 해도 말이다. 간음한 여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음한 여인의 문제의 본질—간음을 하게 된 원인—이 물질/돈과 관련된 생계(生計) 때문이라면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간음한 여인이 그녀의 환경 때문에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는 최소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간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지속적인 간음을 행하는 삶을 인정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을/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간음한 삶/환경을 고쳐 나가려고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의 내용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사회복지와 어느 정도 관계있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 중에 동성애자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누어주는 것, 주사기를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동의한다.<sup>7)</sup>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의 최선의 방편은 아닐망정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에이즈와 같은 성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차선(次善)의 방법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나라’(The Kingdom of God between Already and Not Yet)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땅[here and now]에서 하나님나라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parusia)을 통해서만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성적 일탈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고 또 동성애의 문제/성격이

7) “월드비전(World Vision)은 에이즈 캠페인에서 ABC 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AIDS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월드비전이 에이즈 캠페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ABC는 다음과 같다. A는 Abstain 즉 금욕(禁慾)을, B는 ‘Be faithful’ 즉 배우자에 대한 정절(貞節)을 지키는 것,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보통 소문자로 적어지는 c는 ‘콘돔(condom)’을 의미한다. 소문자 c는 구호단체가 콘돔을 에이즈를 방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Meissner and Metlitzky, 2004: 170)”(강상우, 2010: 15).

간통/간통죄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동성애 관련 내담자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간통으로 인한 자신의 성적 일탈행위를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강요(強要)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은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전환치료(轉換治療, conversion therapy)가 문제 시 되는 것도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이 무시(無視)되는 경우와 더불어 치료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 내담자로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오늘날 간통은 실정법상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의 동성애적 성취향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정법상의 죄가 아닌데 죄책감을 갖지 마시오. 평상시처럼 행동하시요’라고는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생각해 봐야할 점은 내담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설상 알고 있더라도—간통의 사실을 스스로 자백(coming out)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간통행위가 폭로되었는지(Outing) 간에 상관없이—보통의 시민적 예의(civil decency)를 가진 사람이라면 간통을 저지는 사람의 면전(面前)에서 간통자(간통범, 범죄자, 相姦者, 죄인)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간통을 행한 이들에게 간통범(상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르지 않다—실질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고 하더라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간통자 스스로 자신이 간통죄를 범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2 동성애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과 관련해서

김 연구원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민대기 교수의 진술에 기대여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여러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 유보적 시각이 그것이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어떠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본인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의 관점과는 별개로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들에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데 있어 어떠한 시각들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교회의 다양한 눈빛들에 대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민대기 교수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 찬성, 찬반 유보의 세 범주의 시각이 존재한다고 정리하였다(에큐메니안, 2017. 7. 24)(김희철, 2018: 59)

개인적으로 김 연구원이 인용하고 있는 기술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 다양하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학자 던 문(Dawne Moon)이 제시하고 있는 6가지 관점("Beyond the Dichotomy: Six Religious Views of Homosexuality")<sup>8)</sup>이 있다. 문(Moon)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해', '죄인은 사랑하나, 죄는 싫어해', 중간적 입장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와 '그들은 그것을 도울 수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 또는 '건전한 소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oon, 2014: 1218) 스탠리 J. 그렌츠(Stanley J. Grenz)는 '무제한 개방', '제한된 허용', '차별적 허용', '무차별적 거부'라는 네 가지 입장(Grenz, 2016: 211-213)으로 분류하였고 윌라드 M. 스와틀리(Willard M. Swartley)는 '징벌 형식의 거부', '징벌 없는 형식의 거부', '제한된 용납', '완전 용납'이라는 네 가지 반응을 제안(Swartley, 2014: 176-178)하고 있는가 하면 정동섭 교수는 '징벌적 거절' '비징벌적 거절', '적절한 수용',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네 가지 태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정동섭, 2016: 727-728)(안희철, 2020: 299 참조)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태도는 교회 공동체 밖의 일반 사회인들에게서도 여러 시각[spectrum]으로 존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일반인 중에도 단순한 친동성애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동성애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반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극단적 모습을 지닌 동성애 혐오주의자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성애에 관한 찬반양론을 [표]로 거칠게 묶어—상대적인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반동성애적—반동성애자들에게 극단적 혐오를 발언을 하는 소수의 극단적 친동성애들—평가는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극단적 혐오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는 경우 수적(數的)인 면에서 지극히 소수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혐오=기독교'라는 극단적인 모습의 환원주의적 도식에 대해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이다.[過剩代表誤謬 脫皮] 그리고, '동성애가 간통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신앙적 신념은 동성애 혐오(homophobia)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宗教的信念, 동성애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동성애 혐오=신앙적 표현] 물론 교회 공동체 내에 듣기에도 불편한 극단적 반동성애자들이 혐오발언(hate speech)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8) Moon, Dawne (2014). "Beyond the Dichotomy: Six Religious Views of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61(9). 1215-1241. pdf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publications.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097&context=socs\\_fac](https://epublications.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097&context=socs_fac)

FIGURE 1: Religious Views of Homosexuality

HOMONEGATIVE		MODERATE		HOMOPOSITIVE	
God Hates Fags	Love the Sinner, Hate the Sin	"We Don't Talk About That"	They Can't Help It	God's Good Gift	Godly Calling

관련된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신앙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行態)로 신앙적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자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동성애에 관한 찬반양론]

요 요 형	일반 사회(일반인)			교회 공동체(그리스도인)		
	친동성애적 일반인	반동성애적 일반인	극단적 반동성애적 일반인	친동성애적 그리스도인*	반동성애적 그리스도인	극단적 반동성애적 그리스도인
근 거	과학적** 자료	과학적 자료	과학적 자료	퀴어/게이 리딩한*** 신학적 자료	신학적 자료	신학적 자료
	친동성애적 과학적 자료	반동성애적 과학적 자료	반동성애적 과학적 자료	퀴어/게이리딩한 신학/과학적 자료	반동성애적 신학/과학적 자료	반동성애적 신학/과학적 자료
평 가	· 정상적 · 자연적 · 선천적	· 비정상적 · 비자연적 · 비선천적	· 비정상적 · 비자연적 · 비선천적	· 정상적 · 자연적 · 선천적	· 비정상적 · 비자연적 · 비선천적	· 비정상적 · 비자연적 · 비선천적
	not a sin, not a sickness	not a sin, a sickness(/?)	a sickness	not a sin not a sickness	a sin a sickness(?)	The Sin**** a sickness
치 료 목 표	동성애 정체성 형성	동성애 치료(/?)	동성애 치료	헌신적 동성애 정체성	동성애 치료/독신	극단적 동성애 전환치료/독신

※ 더 다양한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분화를 제한하였다.

\* 교회공동체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들의 입장에 불인 명칭이다.

\*\* 과학이라는 명칭은 독일어 Wissenschaft로 넓은 의미의 과학으로 오늘날 science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sup>9)</sup>

\*\*\* 퀴어리딩/게이리딩(queer/gay reading)이란 친동성애적 관점[修正主義]에서 성경을 재해석(re-reading)하는 것을 말한다.

\*\*\*\* The Sin은 sin과 구별되는데, 동성애 문제를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교리적 차원에서의 죄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sup>10)</sup>

9) “과학(scienc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래 ‘과학(科學)’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학문을 뜻하는 독일어 Wissenschaft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였다.”(Ladyman, 2003: 31 역주 참고).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여러 시각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징벌적 거절 또는 징벌적 형식의 거부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권징(勸懲 勸善懲惡의 준말이다)의 오늘날 실효성은 사실상(事實上, de facto) 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선택의 폭이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교회 공동체조차도 친동성애적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섬돌향련교회의 임보라 목사가 사역하는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권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징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곳—他敎團이나 個敎會(local church)—에서 권징을 당한 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 권징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징벌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입술을 통한 소리침—實效性이 缺如된 宣布—에 머문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동성애가 간통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라고 전술(前述)했기에 간통과 관련해서 처벌/권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간통을 범(犯)한 것으로 알려진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조치를 할까? 이론적으로는 권징(Church discipline, cf. excommunication, exclusion from the communion)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간통을 범한 성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와 그의 직책/影響力과 영향력이 어떤가가 권징의 정도/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권징이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교회에 덕(德)이 안 된다고 ‘씻 씻!’하고 덮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이는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다] 권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자리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을 것이다.[이 경우 심지어는 이단에 속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권징/치리를(을) 당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가 조금 더 있는 지라하면 어떨까? 더 적극적으로 간통으로 인한 권징[勸懲事由]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부끄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교회에서 쌍수를 벌려) 어서 오십시오. (간통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환영합니다.”고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와 관련해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가치/평가를

---

10)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파생적인 죄들(sins) 중의 하나(a sin)로 본다. “비록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The Sin)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sins)을 구분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문제는 파생적 죄들을 해결하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물론 파생적 죄들이 윤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구원은 없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파생적인 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이재현, 2016: 180-181)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신천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 명시적으로 개교회들이 ‘신천지 OUT’을 드러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성애자 거절’이라고 하는 부정적 진술이 아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은 결혼한 남녀부부 간의 성적결합만을 인정하십니다.’ 또는 ‘친이성애’(pro-hetero)라는 식의 긍정적 진술로 말이다.[인정머리 없다고 하지 말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豫防하기 위한 개인적인 상상력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실천 기관이나 상담 기관과 시설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기관과 시설 그리고 기관과 시설의 구성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모습/태도들이 더 정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혼란과 소모적인 분쟁[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死後藥方文防止]

### 3 사회복지 실천에서 동성애의 정당화의 논리와 관련해서 재고해 보아야 할 점

동성애의 정당화의 논리를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친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로 내세우는 친 동성애적 주장들과 동성애와 관련해서 가치 드러내기—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의 현장에 반동성애적 가치가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1) 다양성(多樣性, diversity)의 존중과 관련해서

“미국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LGBT Concerns 부서의 부서장인 Clinton Anderson은 ‘전문가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강조하였다”(김희철, 2018: 66).

다양성과 관련해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양성의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인정/尊重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가 인정/수용해주는 것이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친/동성애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성애자 중립적이며 무관심한 자 또는 극단적인 친/반동성애자가 혼존(混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궤변(詭辯)일까? 친동성애적 사람이나 동성애 중립적인 사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기독교가 과거 동성애를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기 이전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만

존재하였을까? 모든 문화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동성애는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동성애적 시각을 갖기 전에 긍정적으로 인정된 것일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했을까? 만장일치로 ‘동성애 환영’하고 쌍수를 들었을까? 오늘날 일반인들 사이에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심지어 유명한 팻빵(podbbang)의 진행자가 강간범(強姦犯)과 같은 잔혹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탑(top, 동성애에서 능동적 역할/插入을 하는 동성애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웃음 섞인 말/농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또 격하게 동의하는 댓글을 보내는 극단적인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과 같은 형태의 집단/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밖의 일반 사회인들이나 다른 종교 공동체나 다른 집단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사례는 제랄드 코레이 등(Gerald Corey, Marianne Schneider Corey and Patrick Callanan, 2011)<sup>11)</sup>이 제시한 사례를 우국희·임세희 등(2013)이 그들의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 사례에서 다양성을 위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냐하면 사례에서 루페와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인용되고 있는 본 사례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결여된 중립적이지 못한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매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본 연구자도 미성년 딸아이와 함께 과거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공원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콘돔과 페미돔 사용에 관한 그림과 자료들을 함께 전시한 행사였다).

루페(Lupe)는 지역 보건소의 사회복지사로 에이즈(AIDS)의 확산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해(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해-역자주) 안전한 성행위(safe sex)를 하도록 촉구하는 워크숍의 취지는 교회 신자인 루페의 신앙과 맞지 않았다. 루페는 워크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자 하는 교회가 그럴 만하다는 생각과 에이즈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가치 갈등을 겪었다. 지역사회를 일하는 사회복지사인 루페에게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어떤 조언이 가능하겠는가?(Corey, Corey and Callanan, 2011.; 우국희·임세희 외 4인 공저, 2013: 69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

우국희·임세희 등(2013)은 이러한 갈등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를 포함한 소외되고 억압받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고, 이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자신의

11) Corey, Gerald, Marianne Schneider Corey and Patrick Callanan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Brooks/Cole.



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루페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우국화·임세희 외 4인 공저, 2013: 69). 큰 틀에서는 G. 코레이, M. S. 코레이 그리고 P. 콜러넨(Corey, Corey and Callanan, 2011)의 지적과 이를 긍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우국화·임세희 외 등(2013)의 지적은 일리(一理)는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眞理가 아닌 一理다] 그렇다면 지역보건소라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지니는 곳에서의 다양성을 기반한 독립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국화·임세희 등이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 동성애에 관한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弘報하는 것만이 최선의 에이즈 예방의 워크숍의 내용일까? “에이즈 예방=ONLY Condom(safe sex)”일까? ‘에이즈 예방=오직 콘돔만’이라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은 친동성애자들의 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기울어진 프로그램이다. 현실적으로 콘돔 사용만이 에이즈 예방의 최선책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의 측면에서—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와 그들을 원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워크숍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에이즈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과 더불어 가치중립적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역보건소의 균형 잡힌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친동성애자들 집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동성애적 집단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호 다른 가치관 속에서 갈등이 아니라 공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소의 에이즈 확산 예방프로그램은 콘돔 사용(안전한 섹스, safe sex)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반동성애자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즈 방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반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을 첨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에이즈 예방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물론 교회 공동체나 반동성애 집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또 스스로 에이즈 예방 워크숍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달리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반동성애자/집단들이 이러한 반동성애적 관점의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동성애의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의 근거와 관련해서

동성애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한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동성애를 범죄(crime)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과 같이 동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이들의 논거가 무엇인가? 동성애라는 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해(害)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동성애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것이였다. 동성애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비범죄화를 해야한다는 것이였다.

벤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동성애적인 관계를 합법화하는 문제에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기존의 법을 시민들의 사적인 삶에 대한 정부의 근거 없는 침범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벤담은 간접적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말하자면, 영국보다는 외국에서 말이다. 나폴레옹 법전은 ‘남색’을 합법화했고, 벤담이 영향력을 미쳤던 브라질 사법 체계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들’을 폐지시키는 데 대해 벤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성애와 관련되며, 특정하게는 동성애와 관련되는 성서 자료들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것이 바로 벤담이 저술한 『바울이 아니라 예수』가 다루고 있는 주제다.(Jennings, Jr., 2011: 154-155)<sup>12)</sup>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 반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일부 일반인들이 “동성애는 반(反)자연적이다”, “동성애는 반(反)사회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 되는 것일까?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그리스도인과 신앙과 관계없는 개개의 일반 사회인들의 개인적 가치판단에 의한 동성애에 대한 반대/否定的 발언만으로 혐오 발언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발언만으로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만약 동성애자들이나 친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발언하면, “동성애를 비자연적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반동성애적 성향의 그리스도인이나 반동성애적 성향의 일반인이 혐오 발언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귀어 신학자들이 (個人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동성애자다” 또는 “예수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주장[그것도 매우 曖昧模糊한 陳述을 통해서]—더 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쓰리썸하는 게이(the Trinity represented a gay, Threesome)라고 주장한다면<sup>13)</sup>—을 한다면 [神聖冒瀆의] 혐오 발언이라고 주장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단(事端)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친동성애자들이 “예수는 사생아(私生兒)다”라고 주장을 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말이며 신성모독(Blasphemia)에 가까운 발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혐오 발언이

12) 벤담이 1816년 무렵에 저술했던 『바울이 아니라 예수』 (Not Paul But Jesus). Louis Crompton, Byron and Greek Love: Homophobia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278-283; 참고로 『Not Paul But Jesus』 (1823, published under the pseudonym Gamaliel Smith)로 출판되었다고 한다.

13) “삼위일체는 게이들의 쓰리썸을 표현한다(the Trinity represented a gay, sexual threesome)고 주장한다.”(Brown, 2016) Brown, Michael (2016. May 20). A Queer Thing Happened to America: "The Darker Side of LGBT Theology: From Queer Christ to Transgender Christ" The Stream. <https://stream.org/the-darker-side-of-lgbt-theology-from-queer-christ-to-transgender-christ>.

라고 주장해야 할까? 정교분리의 세속국가에서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주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 물론 교회 공동체 내 소수의 극단적 반동성애자들이 개인적으로도 듣기 싫은/거북한 매우 극단적인 발언—상대적으로 혐오에 가까운 발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과 비교해서 동성애자들 편에서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이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 동성애에 대한 가치판단, 특히 반동성애적 가치판단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자중(自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극단적 반동성애자들과 극단적 친동성애자들은 상호공생을 위한 필연적 적대라는 생각이 든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친(親)이든 반(反)이든 극단적(極端的)인 모습을 띤 사람/집단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친/반동성애를 떠나서 쿼이 보노(Qui Bono)라고 물어야 한다. “뭐 때문에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러는 거지?” “그렇게도 크지/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부풀어지고 있는 거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3) 성은 유동적(identifies as gender-fluid)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친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가 성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성이라는 교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젠더(gender, 사회적 성)를 말한다. 젠더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성이라는 것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gender)이라는 것이 유동적(fluid)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기 때문에 젠더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동성애 연구의 대표 주자격인 앨프리드 C. 킨제이(Alfred Charles Kinsey)에게서 성과 관련해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킨제이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이성애자 동성애 평가 척도’(일명, ‘Kinsey Scale’) 때문인데 그 척도(尺度) 자체가 성이라는 것이 유동적이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척도를 개발한 킨제이 자신과 동료 연구자들의 성적 지향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였고 성에 대한 유동적인 척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몇 년간 LGBT가 LGBTQQIAPP+로 확장되고 ‘포용적 의미의 별표’가 중복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이러한 별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sup>14)</sup>(Wood, 2002: 50)

14) Trans Student Educational Resources: [www.transstudent.org/definitions](http://www.transstudent.org/definitions).; “이성애에 대응하는 퀴어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기에 ‘퀘스터닝questioning’이나 ‘다른other’ 혹은 그저 ‘+’ 기호와 같은 추가 범주를 더함으로써 LGBTQ, LBGTQ, LGBT+ 등으로 그 목록을 수정한다.”(정끝별, 2020: 31. 4번 각주)

게리 W. 우드(Gary W. Wood)가 적고 있는 것처럼 젠더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유형[數]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여튼 간에 친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이 유동적이라고 한다면, 성 정체성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더 유보(留保, epoche)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성인이 되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본고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이지만 어린 나이에 포경수술(Circumcision, 包莖手術)을 받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일명 ‘내 포피를 돌려줘’라는 운동에 참여하거나 포경 복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타인에—제3자에 의한, 그들이 친권자인 친부모라고 하더라도—의한 결정이 아닌 성인이 된 당사자의 자발적인 자기결정이 존중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自發的的自己決定權尊重次元]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성이 유동적이라면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sup>15)</sup>

프레데릭 G. 리머(Frederic G. Reamer)를 인용하면서 김 연구원은 정체성 형성에 대한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지닌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의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취향과 성적 정체성을 노출하는 시기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이미 치료적 관계(therapeutic alliance)가 형성된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는 것에 대해 주저할 수 있다(Reamer, 2014). 설령, 치료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복지사에게로의 의뢰는 지금의 사회복지사로부터의 “판단 받음” 또는 “거부”로 인식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인 해(potential harm)로 작용할 수 있다(Reamer, 2014)<sup>16)</sup>(김희철, 2018: 70)

이러한 지적은 반동성애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에게서도 발견하기는 매 한 가지다. 민성길

15) 포경수술과 관련하여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선택권[人權]의 문제다. “특히 포경수술은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아이는 종교, 문화, 부모의 신념 등에 상관없이 태어나 자연 그대로의 온전한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 남성 포경수술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포경수술바로알기연구회, 2014: “서문”에서). 포경수술과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성 혹은 여성의 포경수술 등의 이유 없는 성기훼손을 반대하는 운동인 인택티비즘(Intactivism, Intact+activism)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대표적 단체로는 인택트 아메리카, Intact America다)

16) Reamer, F. (2014), “Ethical issues and challenges: Managing moral dilemmas” A. Dessel & R. M. Bolen (Eds.), *Conservative Christian beliefs and sexual orientation in social work: Privilege, oppression, and the pursuit of human rights*. Alexandria, VA: CSWE Press. 233–256.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理由들은 어려서부터 동성애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留保的態度)를 지닌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첫 에포케(epoché, εποχή, 判斷中止) 너의 성적 정체성은 성인이 돼서 너 스스로 결정해 알았지? 그때가 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는 마! 꼭 이것만은 기억해”[심지어 동성애 사이트 방문 수준을 이성애 사이트 방문 수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이 흔히 말하는바, 사춘기 이전 어린 시절에 이미 동성애를 느꼈거나 경험했다는 진술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즉 사춘기 이전의 남자아이들이 성기로 서로 장난(same sex play)하는 것은 동성애로 보이지만, 이는 소아들의 신체에 대한 탐색적(exploratory) 행동이지 성애적(erotic)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민성길, 2016: 586)

특히 예민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동성애자인 남자가 설득하면 쉽게 동성애로 유인된다. 그런 친구, 선배, 교사, 카운슬러 등을 게이 어퍼머티브(gay-affirmative)라 한다. 성적 가해자도 이런 설득 행동을 할 수 있다.(민성길, 2016: 599)

#### 4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그 서비스 유형과 관련해서

김 연구원의 글은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의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그러지는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 사회복지사 중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다는 점과 심지어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했듯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의 경우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가치를 밝히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관과 시설이 지향(指向)하는 동성애에 대한 가치를 밝힘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모적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 or ethical trilemma)를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豫防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와 복지기관(시설)의 관점 밝히기와 관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사와 공공성이 덜 하는 사립/개인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 차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친(pro) 또는 반(anti)이

라는 가치를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성이 강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기관 또는 세금과 같은 공공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아할지 몰라도 공적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서의 중립적이라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인 가치를 둔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친동성애적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반동성애적인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과 서비스 제공/실천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동성애에 대한 가치를 지니는—친동성애든 반동성애든 간에 상관없이—것이 때로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needs)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선정과 서비스적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따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기관)/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 (1)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 a) 동성애에 긍정적인 일반 사회복지사/종교 사회복지사(친동성애적 사회복지사)
  - b) 동성애에 부정적인 일반 사회복지사/종교 사회복지사(반동성애적 사회복지사)
  - c) 동성애에 중립적인 일반 사회복지사/종교 사회복지사(동성애에 대해 중립적/贊·反 성향의 사회복지사)
  
- (2)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할 것이다.
  - a) 동성애에 긍정적인 사적 사회복지시설(친동성애적 복지시설)
  - b) 동성애에 부정적인 사적 사회복지시설(반동성애적 복지시설)
  - c) 동성애에 중립적인 공적 사회복지시설(중립적/贊·反 공적복지시설, 친동성애적 사회복지사, 반동성애적 사회복지사, 동성애에 중립적인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복지시설, 동성애에 대한 친 또는 반 그리고 중립적[정체성 혼란—성 정체성 장애 Gender dysphoria] 내담자<sup>17)</sup> 모두를 클라이언트로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반동성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곧 친동성애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할 것이다.
  - a) 동성애에 긍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17)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클라이언트를 말한다.

- b) 동성애에 부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c) 동성애에 중립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중립적/贊·反 동성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함)

## 5 동성애자 내담자(Client)의 니즈(needs)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김 연구원은 단순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내담자의 다양한 필요(needs, wants)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동성애자의 정체체성(homosexual identity)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논의에 있어서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다만 사회복지사의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과 동성애적 삶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서비스의 제공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반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기독교 사회복지사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 정체성 형성과 동성애적 삶의 강화만을 목적으로 내방(來訪)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 연구원의 논리 전개는 사회복지학에서나 상담학에서 동성애 등에 대해서 성적 소수자로서 당연하게 동성애자가 되도록—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갖도록—원조(empowerment)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동성애 내담자=동성애 정체성 형성과 동성애적 삶의 지속적인 영위/強化에 대한 원조’라는 도식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회정의의 실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복지사 중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이들은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해서 친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시설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귀결이다. 동성애 정체성 형성과 거리가 먼 내담자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꼭 연결되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시설에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콘돔과 주사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성애 내담자가 와서 콘돔과 주사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시설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택한 것이라면 거의 아무런 거부감없이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적 딜레마의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 밝히기<sup>18)</sup>는 중요하다는 점이다.

18) 기독교 사회복지사이든 일반 사회복지사든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자신들이 근무할 복지기관의 가치의 충돌이 예상초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기관)과 복지사 자신이 이러한 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점 밝히기(exposing perspective)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점도 가격을 밖에 공시함으로써 식당은 손님들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손님도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낭패를 줄일 수 있다—말이다. 공공성—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은 복지시설—을 상대적으로 가진 복지시설이나 기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형평—동성애와 반동성애와의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더 다양성을 생각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에 있어서도 종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다양한 내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담자의 필요(needs)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내담자의 필요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필요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성애자 내담자(ex-gay)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내담자가 미성년자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성적 정체성의 결정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전환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내린 결정은 쉽게 원상태로 복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택에 대한 시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최소한 사회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용인하는 시기까지) 판단중단이 필요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을 상대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내담자의 필요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인데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관계없이) 동성애자로 삶을 살다가 자발적(自發的)으로 이성애자로 전향(conversion)하고자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sup>19)</sup> 미성년자가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힘들어 할 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적으로 그 어떤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 혼란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自發的)이어야 하며, 충분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남자아이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본 내용에서 많이 벗어난 내용이지만 치과에서 영구 치아가 나고 있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치아가 바르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영구 치아가 이상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치아가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 치아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근심만 생길 것이다. 잇몸으로 나오기 전의 이[齒]에 대해서 특정한 치료방법이 존재하는가? 엑스레이 촬영은 그 자체로 금전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잘못 위치한 잇몸 속의 치아에 대한 사실의 인지는 근심만을 가져다줄 뿐이다[일종의 근심에 대한 假拂, 즉 憂懷假拂現象]. 잇몸 밖으로 치아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할

---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동성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인을 내담자—삶에서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논문을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박기영 (2015). “동성애자의 인지왜곡에 대한 진리요법적 접근”. 『성경과 신학』 . 76. 299-331; <http://dx.doi.org/10.17156/BT.76.11>



수 있을 뿐이다. 치아 교정(矯正)을 하든 발치(拔齒)를 하든, 이 경우에도 치아 교정/발치에는 적절한 나이[시기]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성년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옆에서 봐주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해 주고 그가 충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밖의 어떤 조장(助長, aggravate)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성 정체성의 전향(轉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향치료(conversion therapy)가 사이버과학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오늘날 거짓된 탈(脫)게이, 탈탈게이(ex-gay, ex-ex-gay) 등이 발생한 것은 무엇일까? 전향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함에 있다고 본다. 치료 집단의 관계자들이 스스로 속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료를 받은 당사자도 스스로 자신을 속였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도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그 결과 등에 대해서 속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스스로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사회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잘못을 행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경우, 특히 불법을 행한 경우에는 제발 하나님은 찾지 마시라. 믿음니네, 영적이네 하는 말도 삼가하시라. 과거 대도(大盜?)라고 이름나던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이 되셨다. 교회는 그의 회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부흥회와 같은 곳에 초청되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에도 영웅처럼 자주 등장했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좀도둑(小賊!)이 되었다. 그것도 이웃 나라에서 발각된 것이다. 그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왜 그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항상 말하지만 평범함,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두벅두벅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대도가 소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다. 세상은 더욱더 변화(回心/悔改, μετάνοι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향(轉向, conversion)이라는 단어 앞에 사이비(似而非)네/유사과학(類似科學)이네라는 부정적인 단어/수식어를 붙인다. 그러나 여전히 전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더욱더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부정직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시쳇말로 뺨치지 않아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과장된 성과가 아니라 단순한 정직함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信賴)하고 그분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향치료법/진리요법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직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자발적으

로 전향을 요청했을 때 그에 맞는 정직한 소스[메뉴얼]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내담자 유형과 서비스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림: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내담자 유형과 서비스]

유형	내담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성적 정체성 미완성	성적 정체성 미완성된 성인	중립적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중립적 서비스 이성애와 동성애의 균형 잡힌 서비스
성적 정체성 미완성	일반적 미성년자/ 동성애 성향의 미성년자	중립적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중립적 서비스/ 성과 관련된 일반내용
성적 정체성 완성	동성애 성향으로 가고자 하는 자	친동성애적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친동성애적 서비스
성적 정체성 전향	이성애 성향으로 전향 의사를 가진 자	반동성애적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전향과 관련된 서비스

조금 옆길로 빠지는 내용이지만, 믿음/信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강요가 되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를 조장하여 그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다. 힘이나 다른 알력을 행사해서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멀다. 인위적인 努力/방식을 성령의 역사라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치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스스로가 자발적—오직 정직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성적 이탈행위[죄, a sin]라고 해서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이들에—특히 약자에 속하는 미성년자나 여성—대해서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意思)가 아니라, 그의 가족(부모나 교회/영적 지도자)의 말만 듣고 탈동성애를 시도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넘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에 벗어난 강제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라.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발적인 것들인가?

## 6 ‘사회정의(社會正義, social justice)’ 실현과 관련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김 연구원의 사회정의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에 대해서 동감한다. 사회정의는 복지현장에서 핵심 가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사회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는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의”는 기독교의 가치(Todd & Rufa, 2013)<sup>20)</sup>이자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한국 사회복지사협회, 2001)이다. 기독교계에서 신학적 해석에 따라 이 “사회정의”의 개념은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형평과 평등의 회복과 같은 사회참여적인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개념에서부터 근본주의적 신학에서의 개개인의 구원의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희철, 2018: 72)

그런데 앞서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서 차별받고 있던 무리/집단들과는 다른 성질의 소수자/약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김영한 교수가 존 R. W. 스타트(John R. W. Stott) 목사의 책을 인용하면서 밝힌 것처럼 동성애는 창조질서와 관련된 인간의 죄악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스타트(J. Stott)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sup>21)</sup> 동성애자를 노예, 흑인, 여성해방과 유비(類比) 관계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노예제도, 흑인차별, 여성차별 등은 창조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게이 내지 레즈비언 해방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 반항(게이와 레즈비언 행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김영한, 2016: 295).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동성애를 다룰 때에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기초(基調)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동성애를 얘기할 때에 과거 기독교의 흑역사(dark chapter)인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여성차별과 함께 묶어서 도매금(都賣金)으로 이야기하는 데 동성애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창조질서에 대한 위반이고 동성애를 제외한 기독교 흑역사는 잘못된 성경해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성애=창조질서 위반[고로, 반동성애=올바른 성경해석]’, 동성애를 제외한 기독교 흑역사=마녀사냥, 노예제도, 여성차별, 인종차별=잘못된 성경해석[誤解].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은 기독교의 잘못된 흑역사의 일부인 것은 맞다. 다만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창조질서 위반이라는

20) Todd, N. & Rufa, A. (2013). “Social justice and religious participatio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Christian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1. 315-331.

21) Stott(2011: 224).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성애는 다른 흑역사의 피해자들과는 면밀히 구분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법학자인 김일수 교수도 동성애를 ‘자발적 소수자’(김일수, 2019: 79ff)<sup>22)</sup>로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차별 받은 소수자들과 구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자발적 소수자로 구분한다(김일수, 2019: 79).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 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에 대한 D. 마틴 로이드-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LJ) 목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동성애/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이들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LJ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성경적,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은 존중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단서를 붙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것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황재범, 2019: 235)

동성애에 대해 반동성애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love the sinner, hate the sin)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동성애자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의 논리의 문구로 결코 위안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김희철, 2018: 69-70).

퀴어 입장에서 ‘죄는 미워하며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사랑하라)’는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시우(2018)는 페미니스트 연구자인 재넷 R. 제이콥스와 앤 펠레그리니(Janet R. Jakobson and Ann Pellegrini)를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을 내세우는 일은 원색적인 적대나 공격적인 혐오보다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관용한다는 식의 위계질서를 묵인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시우, 2018: 199-200; Jakobson and Pellegrini, 2004: 50 참조)<sup>23)</sup>

22) “우리는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 사회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건전한 법질서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같은 값이라도 ‘기존의 법질서를 손질해야 할 입법개혁이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존치를 주장하는 쪽보다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의 질서상태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가야 할 입법정책의 길이다.”(김일수, 2019: 7)

23) Jakobsen, Janet R. and Ann Pellegrini (2004). Love the Sin: Sexual Regulation and the Limits of Religious

손쉽게 ‘동성애자=지옥’이라는 도식에 기초한 극단적인 발언—교회 공동체가 쉽게 하는 ‘불신=지옥’이라는 발언도 마찬가지다—은 삼가해야만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 쉽게 내뱉는 말인데 이러한 모습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사후(死後)에 대한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自制)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천국에 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하나님만 아신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영역이다. 다만 우리는 답을 아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평가성 발언에 대해서는 지양(止揚)할 필요가 있으며, 그보다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 III 나아가는 말

#### 1 의뢰 이외에도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김 연구원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본고를 마치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뢰(Referral)-최선의 선택인가?” 동성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내담자와 동성애적 행위 (intercourse, sexual activity)를 지속하기 위한 필요에 대해서는 김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성인이 된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동성애 성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것에는 의뢰의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필요(needs, wants)에 대해서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조력과 원조는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승구(2016: 427) 교수가 분류하고 있는 [표]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해 어떤 돌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sup>24)</sup>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동성애 성 정체성과 동성애 삶을 강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

Tolerance. Boston: Beacon Press.

24)

[그림: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탈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교회
동성애를 억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여전히 동성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불신동성애에 대한 돌봄	세상

자료: 이승구(2016:427)

를 클라이언트인 동성애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앞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에이즈(AIDS)와 다른 성병의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성애자에게 주사기와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었다. 물론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따라 이에 대해—본 연구자의 개인적 주장—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코로나-19(COVID-19) 당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전염성이 강할 때 누군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코로나-19와 무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양성을 보이며, 심한 기침과 발열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 누군가 다가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사자인 그와 그 밖의 모두[우리/사회]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적당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표: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원조]

영역	기관(시설)의 유형	클라이언트(내담자) 유형	복지 서비스
교회	반동성애적 사회복지기관(시설) <sup>25)</sup>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동성애자	탈동성애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적 제공
		동성애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동성애자	동성애 억제에 필요한 서비스 중심적 제공
		여전히 동성애적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동성애자	동성애적 성 정체성과 동성애 삶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
세상	반동성애적 사회복지기관(시설)	탈동성애/동성애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반인 동성애자	탈동성애/동성애에 억제를 위한 서비스를 중심적 제공
	친동성애적 사회복지기관(시설)	동성애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반인 동성애자	동성애 성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동성애 삶을 강화하는 서비스 제공
	동성애 중립적 사회복지기관(시설)	여전히 동성애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일반인 동성애자	

## 2 사족 달기

본고의 내용과 벗어난 감이 있지만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며 오늘날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25) 논의의 편리를 위해 김 연구자가 기술하였듯이 동성애에 대해서 전통/정통주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반동성애적 가치를 가진 기독교 사회복지사로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반동성애적 시설과 기관으로 본다.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묻고자 한다.<sup>26)</sup> 기독교와 사회에서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일까?”[hot issues]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동성애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우선적일까?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동성애 성 정체성 형성을 위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일반 사회복지사가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동성애자를 만날 확률은? 오늘날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면서 교회 공동체 내의 성폭력과 간통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그러운가? 특히 교회 내의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 말이다.

■ 윤리기준. … I.1.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김희철, 2018: 58)

사회복지윤리강령에서 “성취향과 관련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1388에서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설명한 상담자에 대한 고발성 기사가 나왔으며(일다, 2016), 2019년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비롯하여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의 문제로 한 회원이 제명되기도 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2019.02. 14)”(정애경·윤은희, 2020: 584)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며 다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26) 오늘날 일부 교회 공동체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과잉화(過剩化, over-degradation)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選舉] 후보자 선택=[公約] 동성애 반대라는 단순 도식에 반대하는 글로는 강상우 (2020.10).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학회> (통권 37호). 1-41;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438>

## 참고문헌

- 강상우 (2020.10).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학회>. (통권 37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438>.
- 강상우 (2014.05).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열개 구상을 위한 기본 연구” <춘계학술대회> (통권21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936>.
- 강상우 (2010.06). “성경해석과 사회복지: 인간 이해, 빈곤 원인 그리고 사회복지의 목적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5(2). 7-40;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934>.
- 김일수 (2019).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서울: 세창출판사.
- 김희철 (2018). “최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비판사회정책』. 61. 51-94;  
<https://doi.org/10.47042/ACSW.2018.11.61.51>
- 민성길 (2016). “6부. 제3장. 정신의학에서 보는 동성애”.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 서울: 킹덤북스. 577-636.
- 시 우 (2018). 『퀴어 아포칼립스: 사랑과 혐오의 정치학』. 서울: 현실문화.
- 안희열 (2020). “동성애자들을 향한 교회의 선교 방향 제안”. 대학출판부 편 (2020). 『동성애, 성경에서 답을 찾다』. 개정증보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93-322.
- 우국희·임세희·성정현·최승희·장연진·좌현숙 (201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고양: 공동체.
- 이승구 (2016). “5부. 제2장.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도와 목회적 돌봄”.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414-440.
- 이재현 (2016). “1부. 제4장.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142-183.
- 정끝별 (2020). “한국 현대시, 퀴어링으로 횡단하기”. 『이화어문논집』. 50. 29-58.
- 정동섭 (2016). “상당심리학자가 본 동성매력장애”.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 서울: 킹덤북스. 710-766.
- 정애경·윤은희 (2020).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83-608.
- 포경수술바로알기연구회 (2014). 『포경유감(捕鯨遺憾)』. 서울: 여문각.
- 황재범 (2019). “로이드 존스의 복음주의적 정치윤리: 그의 로마서 13:1-7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 62. 212-255; 10.34271/krts.2019.63..212

- Agamben, Giorgio (2021). 『얼굴 없는 인간: 팬데믹에 대한 인문적 사유』 . 박문정 역. 파주: 효형출판.
- Grenz, Stanley J. (2016).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 서울: 새물결플러스.
- Jennings, Jr., Theodore W. (2003).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The Pilgrim Press. 박성훈 역 (2011).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 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 서울: 동연.
- Ladyman, J. (2003). 『과학철학의 이해』 . 박영태 역. 서울: 이학사.
- Meissner, Ursula and Heinz Metlitzky (2004). 『죽음의 춤』 . 유명미 역. 서울: 대원사.
- Stott, John R. W. (2006).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Grand Rapids. MI: Zondervan.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서울: IVP.
- Swartley, Willard M. (2014). 『동성애: 성서적 해석 해석과 윤리적 고찰』 . 서울: 대장간.
- Wood, Gary W. (2018). The Psychology of Gender. Routledge. 한혜림 역 (2020). 『젠더: 심리학으로 말하다』 . 서울: 돌베나무.